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두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976

발의연월일: 2023. 6. 29.

발 의 자: 김두관·김민석·김병기

문정복 • 유기홍 • 유동수

전재수 · 조정식 · 주철현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·풍선·간판·현수막·애드벌룬 등을 설치· 진열·게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 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

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합니다(안 제90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0조제1항제1호 중 "화환·풍선"을 "풍선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시설물설치 등의 금지) ①	제90조(시설물설치 등의 금지) ①
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(보	
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	
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	
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	
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	
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할 수 없다. 이 경우 정당	
(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)의	
명칭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	
려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의 성명·사진 또	
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할 수	
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	
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	
것으로 본다.	·.
1. <u>화환・풍선</u> ・간판・현수막・	1. <u>풍선</u>
애드벌룬・기구류 또는 선전	
탑,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	
시설을 설치·진열·게시·배	
부하는 행위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